

정보통신공사사업 변경신고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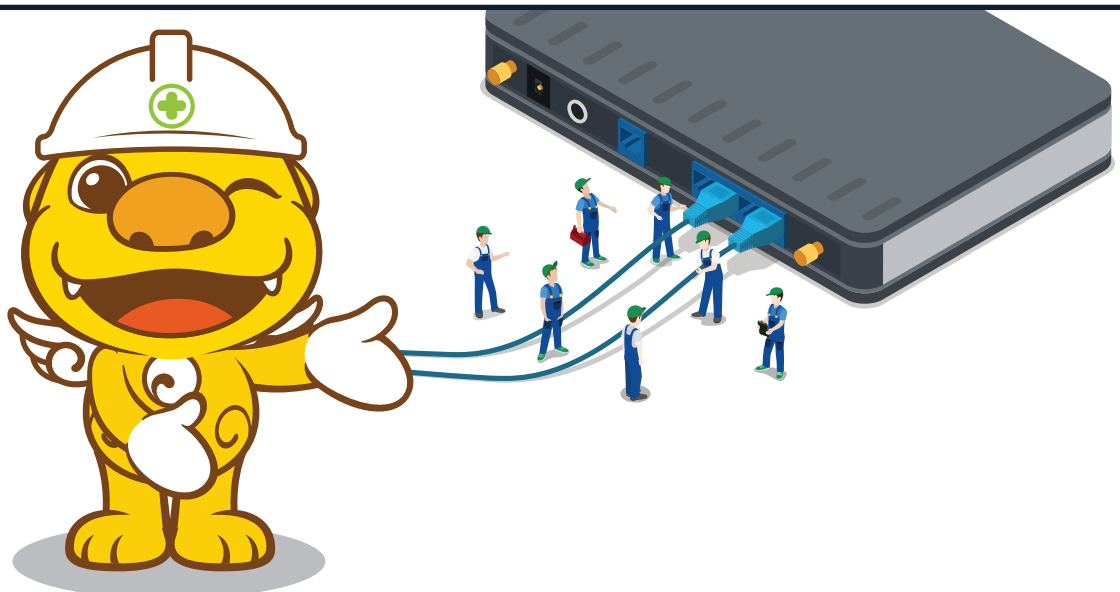


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사업 변경 신고

- | **관련규정**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제23조 및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시행령 제23조
- | **신고대상** 상호 또는 명칭, 영업소의 소재지, 대표자, 자본금, 정보통신기술자의 변경사항
- | **신고기간**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**30일 이내**
- | **신고방법**
 - ① 인터넷 신고 :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ica.or.kr>) 메인페이지 → 종합정보시스템 → 정보통신공사사업 → 온라인 변경신고
 - ②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 방문 신고
※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, 4층(갈월동) 방문
- | **행정처분**
 - ① **지연신고**(정보통신공사사업법 시행령 별표10)
 - 31일 이후 ~ 3개월 이내에 신고한 자 : **과태료 50만원**
 - 3개월을 경과하여 신고한 자 : **과태료 100만원**
 - ② **거짓신고**(정보통신공사사업법 시행령 별표8,10)
 -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 : **과태료 150만원**
 -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 : **영업정지 3개월**



정보통신공사협회



문의 : ☎ 02-2133-2880,2896,2897 120 다산콜센터